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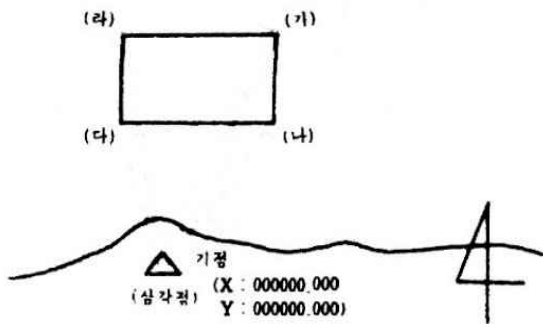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2]

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(제2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관련)

1. 어업의 종류: 축척: 1/50,000 또는 1/25,000
2. 어구 또는 조업방법:
3. 수면의 위치: ○○시·도 ○○시·군·구 지선
4. 수면의 구역: 아래 표의 가·나·다·라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둘러싸인 수면
5. 면적:  $m^2$  (            h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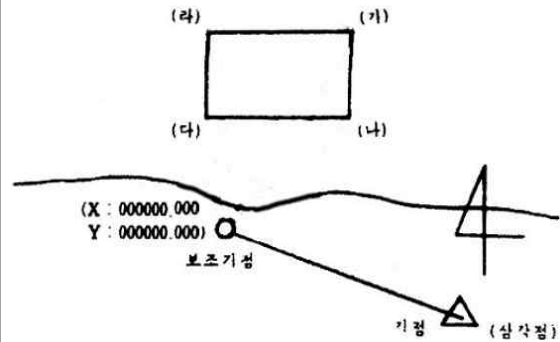
구획점	직각좌표		경위도		점간거리(m)	
	X(N)	Y(E)	위도	경도	구간	거리
가	000,000.0	000,000.0	00° 00' 00.00"	000° 00' 00.00"	가-나	0,000.0
나	000,000.0	000,000.0	00° 00' 00.00"	000° 00' 00.00"	나-다	0,000.0
다	000,000.0	000,000.0	00° 00' 00.00"	000° 00' 00.00"	다-라	0,000.0
라	000,000.0	000,000.0	00° 00' 00.00"	000° 00' 00.00"	라-가	0,000.0

(예시 1) 기점(삼각점)을 직접 사용한 경우



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

(예시 2)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



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